

• 대내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보강과 재정규제의 완화

○ 특히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UR협상이 해결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92년 이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남은 기간동안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시행착오 없는 보완대책을 마련

OUR협상과 국내제도개선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 마련

• 협상진전에 따라 UR대책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협상대응과 더불어 국내 제도개선에 보다 역점을 둠

○ 우루과이라운드가 우리경제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노력

GATT/UR 농산물협상 전망과 대책

조규일/농림수산부

I. 협상전망

○ 의장초안은 금후협상에서 각국의견을 반영, 수정될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협상분위기로 볼때 NTC 등 수입국 입장은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8월 회의부터는 초안(Draft Text)의 내용에 대한 협상과 더불어 관련 GATT 규정(11조, 16조, 20조 B 등)의 개정작업이 집중 논의될 것이며, Offer 제출에 대비한 감축원칙에 대한 협상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이행계획(Offer)은 합의될 감축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10.15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Country List에 년도별 감축계획을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Offer에 대한 양자협상은 Rule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아 개별국가의 협상력에 크게 좌우됨으로서 협상력

이 약한 개도국, 수입국등에 크게 불리할 것이 예상됨.

○ 결론적으로 수입국 입장의 추가 반영, 감축폭의 결정등에 있어서 의장초안은 다소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GATT의 농산물 교역규범은 현행보다 대폭 자유무역체제로 개편될 것이 확실시됨.

II.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예상효과

1. 예상효과

○ 점진적인 수입개방 불가피

- 기존의 수입자유화품목의 현행관세 수준 동결
-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의 자유화와 동시에 국내외가격차만큼의 관세상당액 부과
- 그러나, 관세상당액은 계속 감축됨으로서 경쟁력이 빈약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유지에 큰 어려움 예상

• 특히, 현재 수입이 거의 없는 품목도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문제발생

○국내보조정책의 규제

•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국내보조정책 지원이 현행 수준으로 동결되거나 일정기간내 점진적인 감축의무가 예상

[감축 및 규제대상이 되는 정책예시]

이중곡가제, 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 장·단기 저리 영농자금 지원

차액보상, 생산조정보상등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새로이 지급근거를 마련한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곤란

• 경과기간후에는 감축수준 범위내에서만 농업보조 가능

III. 대외협상대책

1. 협상기본목표

○주요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과 농업지원 근거를 최대한 확보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를 GATT 규정에 명확히 반영

○국내농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상기간 확보

2. 추진현황

(1) 우리나라입장의 적극 개진

—'88.10 및 '89.11 서면제안과 협상참여를 통하여 아국입장 적극 개진

○토지와 기상조건에 제약을 받는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 농업보호의 필요성 강조

○세계 농산물 교역의 왜곡은 주로 수출국의 책임임을 적시

○식량안보, 고용의 안정, 국토 및 환경보전,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유지에 필요한 농업보호조치 인정

○농산물 과잉생산과 수급조절에 필요한 수입수량

규제 허용

○우리농업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감안, 합의사항 이행시 장기간의 유예기간과 정책선택의 자율성 부여

(2) 협상대응체제 확립

○농림수산부내 농업협력통상관실을 신설('90.3) 협상 전담체제 보강

○주제네바 대표부에 농무관 증원

○각종 공식, 비공식회의에 정부, 연구기관, 학계로 구성된 본부대표 파견으로 현지 협상력 보강('90년 6회 참석)

(3) 농산물 수입기방 특별위원회 구성('90.1)

○정부, 학계, 연구기관, 농민, 농민대표등으로 구성

• 우리 실정에 맞는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수립, 농산물 수요개발, 수출입 제도개선, 대체작목개발등 개방대책 수립 착수

3. 향후협상대책

(1) 기본방향

급속히 전개되는 최종단계의 협상에 대비하여

○전략적 협상대안의 수립과

○아국실리의 최대한 확보에 협상력 강화

(2) 하반기 협상대책

○식량안보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유지에 필요한 쌀을 위시한 주요 농산물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추진(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등과 공동 전략)

○NTC 관련 주요농산물에 대한 지원정책은 계속 허용될 수 있도록 근거화보

○현재 10년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합의기간을 농업개도국에게는 보다 장기간 허용되도록 추진(개도국과 공동 보조)

○금후 협상안, 작성을 위한 조직강화(농경반, 학

계등 참여)

○각국 주재 농무관을 활용하여 이해당사국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

○우리 실정에 맞는 이행계획의 신중한 수립

IV. 국내대책

1. 기본방향

○농발대책에서 제시한 농업구조조정, 농외소득원 확축,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어가 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UR 협상 내용을 감안한 국내농산물가격 지지 정책 보장·발전

○'97까지의 BOP 유예기간을 활용, 주요 품목별 중장기 경쟁력 제고 대책수립 추진으로 개방하고도 경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기술개발투자의 대폭 확대

○수입보완대책 예산 우선 확보등 지원체제 강화

○농어촌 복지향상 대책의 본격적 추진

2. 세부추진대책

(1) 농업구조개선과 생활환경개선

농업구조개선

○영농규모 확대 시책 적극추진으로 전업농 육성

• 주요품목별 적정 영농규모설정 및 규모확대 적극 유도

○농업진흥지역('92까지 지정)에 대해서는 논과 밭의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등 생산기반을 2,000년 까지 완비

•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 농업기계화 적극 추진

○농공지구 조성과 운영의 내실화 및 농어민 직업 훈련으로 농외취업 확대

농업촌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기반조성

○면지역에 대한 농어촌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은 1단계로 2000년까지 완료

• 2000년 이후에는 농어촌 마을정비등 2단계 개발 사업 추진

○농어촌마을과 지방도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1996년까지 확장 및 포장을 완료하고, 마을과 경작지를 연결하는 지선도로는 2000년까지 확장 및 포장 완료

○농어촌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은 '92년까지 완료

○농가주택개량사업(온수시설, 부엌, 변소, 목욕실등 현대화)적극 추진

농업기부담 경감대책추진

○부채경감

○학자금부담 완화등

(2) 주요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추진

○개방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추진

○'97년까지 유예기간내에 기술개발, 생산비 절감 중점 투자

○첨단과학기술연구개발 투자확대

가) 곡류

○쌀

• 안정생산 계속하되 일본품종을 능가하는 양질품 종개발, 미질개선 주력

• 생산성 향상기반투자의 계획적 추진

○보리

• 동절기 유휴지 활용 차원에서 안정생산유도

• 대단위 기계화단지조성등으로 노력절감

○콩

• 식품용도별 양질콩 품종개발보급, 국내수요확대

• 기계화, 단경종 밀식재배 등으로 생산성 향상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부모형 개발보급

—맥류+콩, 마늘, 양파+콩, 연초+콩 등

○옥수수

- 일부지역 주요소득원으로써 안정생산유도
- 우량종육성, 성력기계화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나) 과실류(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등)

다) 채소류(양파, 생강)

라) 화훼류

마) 축산물

- 소 : 가족단위전업, 적정양축규모육성, 품질고급화(수입육과 차별화)

○ 돼지 : 수출증대지원(2001년까지 70,000 M / T 수출목표로 추진)

○ 닭고기 : 부위별 판매 등으로 외국산과의 경쟁력 제고 유도

(3) 수입보완대책 지원체계 강화

수입보완대책예산의 우선확보지원

○ '91~'97기간중 7조원 추가소요 전망

○ 농어촌발전기금의 대폭확대, 개방대책 집중투자
- 농림수산물 수입관세류 및 농수산기자재 부가세 액을 수입개방 보완대책에도 활용

○ 농림수산물 수입이익금 농어민환원확대

- 참깨, 쇠고기등 일부수입제한품목의 수입이익은 농안기금, 축진기금으로 흡수, 농어민에게 계속지원
- 향후 수입이 개방되는 주요품목은 농협등 생산자 단체가 수입에 적극참여, 발생이익을 농어민에게 환원

○ 농어촌부흥세 신설 추진

수입관리제도개선

○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관세를 효과적인 국내생산 기반 보호수단으로 활용

- 수입제한시대에서 개방화시대에 맞는 관세제도 확립

- 과실류에 대한 계절관세등 품목별로 특성에 맞는 관세율적용

○ 검역능력확충으로 수입으로 인한 국내피해 최소화

- 수입지역별 품목별로 검역세부대책 마련

- 국내검역인력교육 및 신설·장비확충

○ 수입확대로 인한 국내피해가 클 경우 적절한 수입제한조치 시행

-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한 긴급제한등

○ 부도덕한 수입 등에 대한 실질적 제재조치강화

- 수입제한품목을 위장수입하거나 수출용원자재의 변칙유출등 비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조강화

-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국산농산물 애용운동전개

(4) 농어촌 복지대책의 추진

- 관계부처, 농어촌경제연구원 등과 협조추진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의 개발 및 투자확대

○ 선진국형 사업계획도입을 위한 전담작업반 설치

- 농민연금제, 작물보험제 등

○ 구조조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개발

- 최저소득보장제(Income Safety Net)등 도입

농업촌교육환경개선

○ 농어촌 우수 고교 집중육성

○ 농과계고교의 공과계전환유도

○ 농어촌지역기술계 전문대학설치지원 방안등

의료비 절감 및 의료수준 질적제고

○ 농어민의료보험제도개선

○ 농어촌의료환경개선 집중투자

농업촌개발을 제약하는 애로요인 적극티개

○ 읍지역의 시승격등 농어촌개발낙후화 요인 제거

○ 일선조직을 대폭정비, 농어촌복지지원 기능강화